



의안번호	제9호
의 결 년 월 일	2020. 8. 26. (제 4 회)

심 의 · 의 결 사 항

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
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제 출 자	임대관리팀장 임연일
제출년월일	2020. 8. 26.

부 의 안

제 4 회 이 사 회			
개최일시	2020. 8. 26.(수)	의안번호	제9호
의 제	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		
구 분	☒ 의 결 사 항	☐ 보 고 사 항	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입찰시설 등 임대료에 대한 임대보증금 징수 근거 규정 개정으로 보증금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신규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납부는 현금 또는 우리공단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확대함. (안 제12조 제4항)

4. 주요 토의과제

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5. 참고사항

가. 제안 근거: 단규관리규정 제5조(입안) 및 제7조(절차 및 시행)

[참고자료]

-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및 시행규칙
-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
-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시설물운영관리규정
-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·운영 조례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협 의 : 마포구 지역경제과 협의 완료(마포구 지역경제과-31418, '20. 8. 20.)

라. 절 차 : 이사회 → 구청장 승인 → 발령

마. 기 타 :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제4항 중 “월 임대료의 20개월분으로 한다.”를 “월 임대료의 20개월분 현금 납부 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례) 제12조 제4항의 개정은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임차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임대료 등의 책정 및 수납 관리) ① ~ ③ (생 략) ④ 보증금의 최저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월 임대료의 20개월분으로 한다. 다만,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입주자는 제외한다. ⑤ ~ ⑧ (생 략)	제12조(임대료 등의 책정 및 수납 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----- ----- 월 임대료의 20개월분 현금 납부 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. -----. ⑤ ~ ⑧ (현행과 같음)
	부 칙
	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적용례) 제12조 제4항의 개정은 현 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임차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적 용할 수 있다.